



현대사회와 인권 7강

- 인권보장체계 -

2026. 4. 15.

“ 인권의 실현 ”

인권의 보장



■ 인권목록의 확립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장전
헌법과 관련법령을 통한 기본적인권의
기준을 확립

■ 새로운 인권목록의 확장

기후위기와 인권, 난민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인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목록화 하는 작업

■ 인권보장시스템의 강화

국제사회 : UN의 각종 조약과 기구, 정책
국가 : 국가인권기구, NAP, 인권법령
지방정부 : 인권기본조례,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등 전담부서

■ 인권의 공백, ‘기업과 인권’ 강조

인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 제도, 정책의 도입

“ 인권보장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e | 인권교육센터 | 인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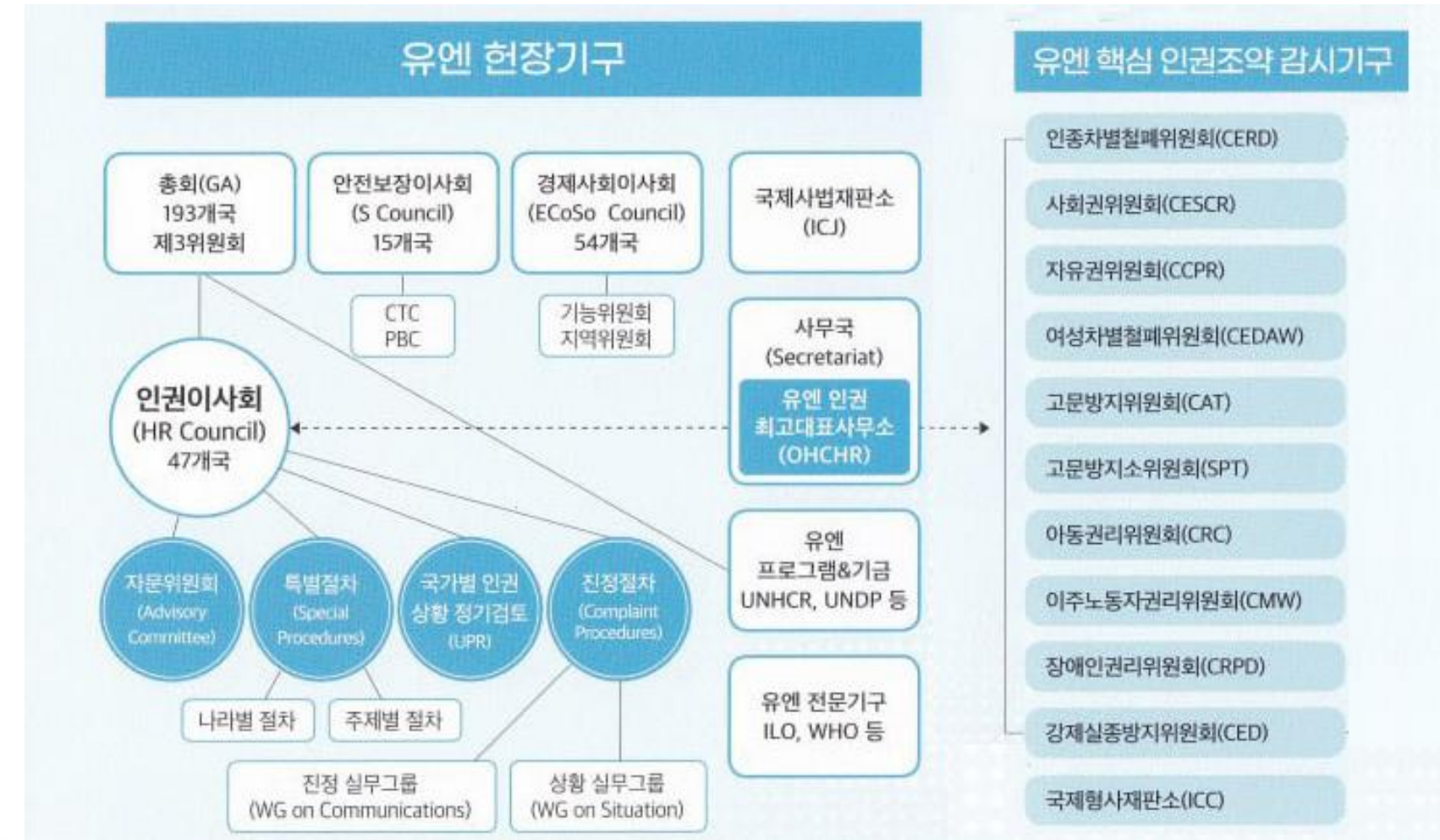
국제인권규범	유엔 현장기구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결정 등)	국가인권기구
인권기준(원칙, 지침 등)	인권이사회 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핵심 인권조약	특별절차(주제 보고서)	사회권위원회	사회권	국가인권기구
인권조약 일반논평/권고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자유권위원회	자유권	
인권조약기구 최종견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	
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	국가인권기구 관련 유엔 결의	고문방지위원회	고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기타	고문방지소위원회	아동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강제실종	
파리원칙(일반견해)		장애인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	
		강제실종방지위원회		

국제인권보장체제

세계인권선언과 양대규약, 그에 따른 여러 의정서와 협약, 다양한 조약기구와 절차 등 대륙별 지역 인권기구 설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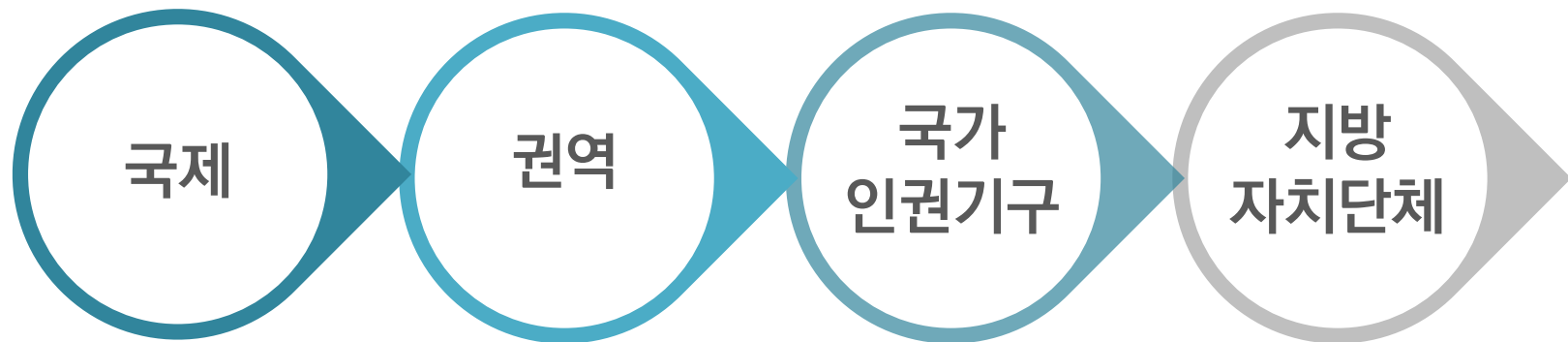
파리원칙 그리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국제인권보장체계” – 유엔헌장기구와 인권조약감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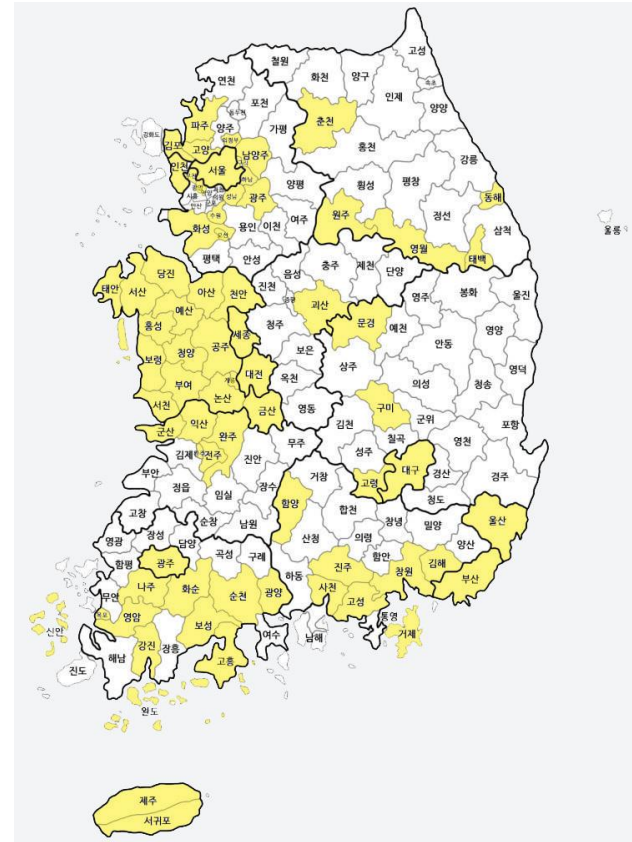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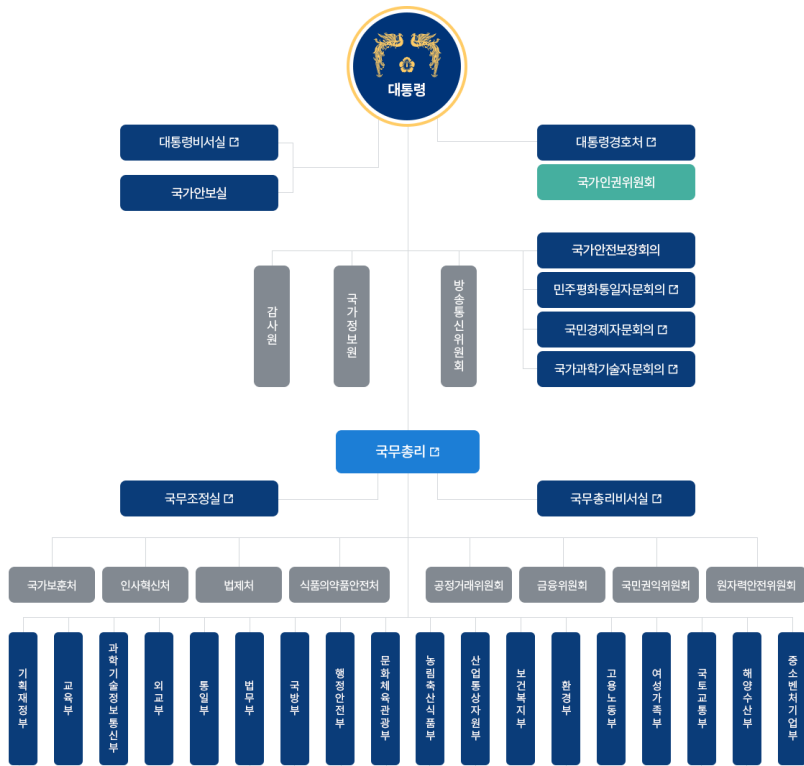
“ 인권보장체계 ”

국가중심 -> UN/UDHR이후 : 인권영역의 확산 실제화



인권보장책무 : 국제사회 + 각 국가 → 지방자치단체(인권도시) + 기업(BHR 인권경영)

“국가인권보장체제” –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인권기구



지역인권보장체제

지역사무소 + 지역인권보장체계(지역인권위원회 + 지역인권담당부서)

“국가인권보장체제” – 규범, 정책, 제도

01 규범 : 인권정책기본법 (인권기본법)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21. 6. 30.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12월 18일 국무회의 통과되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단 된 상황
차별금지법(평등법) 역시 2007년이후 꾸준히 추진했지만 논의중단 된 상황

02 정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 5년 단위 종합계획
1차 NAP(2007~2011), 2차 NAP(2012~2016), 3차 NAP(2018~2022)
2022년 8월 제4차 인권NAP(2023~2027) 권고(핵심 인권 과제 100개 총 6개장)

03 제도 :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1. 11. 25 설립), 총원 250명 (본부 206명, 지역사무소 44명)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대구, 제주출장소 등 지역인권사무소 설치

제도 : 행정부 인권담당기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행사 및 홍보

“ 파리원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



“2000년 겨울 명동성당 들머리”

- 2000년 12월 28일. 물 건너 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재론하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 울산, 광주, 전북 전주, 경기 수원 등 전국에서 활동가 18명이 경찰 봉쇄를 뚫고 삼삼오오 성당 들머리에 모임.
명동성당 계단에 종이 상자 한 장 깔고서 온몸으로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1월 9일까지 한겨울 13일간의 거리 단식농성 진행.
- 우리의 요구는 명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농성의 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
2001년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
- 3년 동안의 투쟁 끝에 2001년 11월 25일 역사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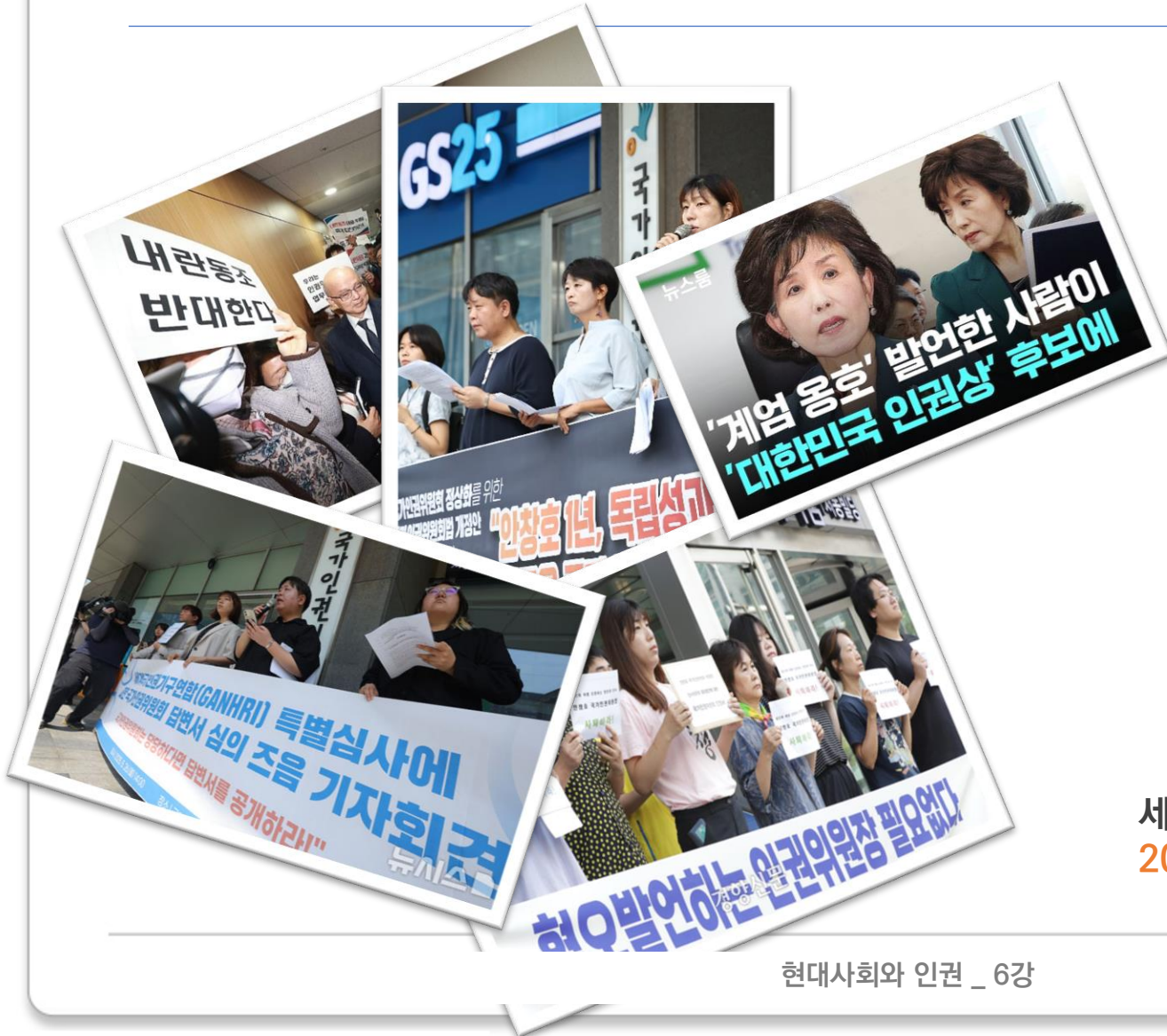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퇴행”



“
“잃어버린 10년”
그러나
더 강한 연대로 지켜낸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지역사무소 폐쇄 중단 촉구
2009. 1. 30.

“국가인권위원회 퇴행”



“

“2025년
인권기구 존립이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예정
2025. 10. 30.

예견된 “국가인권위원회 퇴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 일부 상임위원이 보여주는 **개인적 일탈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
- 파리원칙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자율성,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South Korea.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for various categories like '국제인권규범', '유엔 헌장기구',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정보(결정 등)', and '국가인권기구'.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document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adopted on December 20, 1993. The document is present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s a table of contents with sections A through D, where section B,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Composition, Independence, and Diversity), is currently selected.

“ 파리원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

일반견해 1-1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임명제도, 임명조건, 임무, 권한, 예산 및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완전한 조항의 삽입을 필요

일반견해 1-7

-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에서 **다원성**이란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
- 독립성을 갖춘 의사결정권을 임명하는 선택요건은 **법률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며, 임명 이전에 공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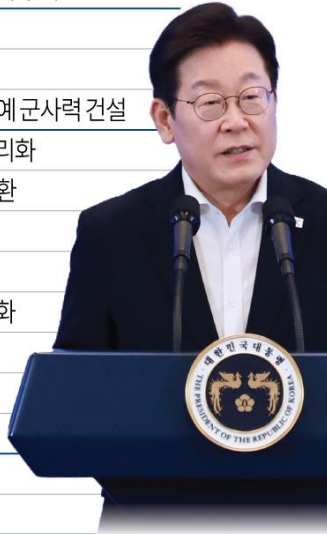
일반견해 1-8

- # 선정 및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고 한다.
-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한다.
 -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한다.
 -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한다.
 - d)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한다.
 - e) 임명된 자들을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주요 내용

정치·사회	개헌	국 5 추 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부 재정운용 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 효율화		
남북관계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 제도화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외교	한미동맹 고도화 및 외교 다변화 추진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국방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경제 발전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 위한 규제 합리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SI 고속도로 구축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제로화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균형 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 국가인권위 정상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2024.10.10)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2013년 최초 결의안 채택된 이래 총 7차례 컨센서스 채택

“지역인권보장체제” – “지방정부와 인권“ 2013년 한국정부 주도 유엔인권이사회 최초결의안 채택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7. 지방정부의 인권 업무는, **존중 의무, 보호 의무, 이행 의무**라는 전형적인 국가의 세 가지 인권 의무를 따른다.
29.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소수민족, 토착민, 성차별 피해자,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 지방정부가 당면한 다섯 번째 문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불인정이다.
이는 보통 지방정부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나타난다.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가 소외된 공동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인권, 인권도시” _ 담론

- **인권도시 담론** : 도시공간을 전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용과 향유의 권리를 보장
- **유엔의 실천적 논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유엔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현장 추진, 인권도시운동

해외 인권도시 사례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 Canada)
독립적 옴부즈만 도입

오스트리아 그라츠 (Graz, Austria)

지역사회 인권보고서 발표, 인권산책로, 인권 트레일 등

일본 쿠루메

인권교육, 인권문화확산 주력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시민참여예산제, 인권영향평가

“인권, 인권도시” _ 지자체 인권보장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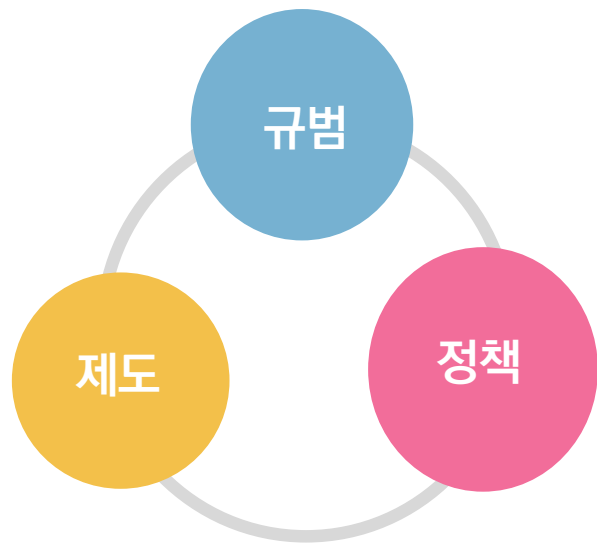
인권의 제도화 : 인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레짐을 구축해가는 과정 즉, 인권향상을 위한 도구적 장치를 마련한 후, 인권의 가치가 하나의 안정적 질서로 작동하도록 함

“인권레짐” – 규범, 제도, 정책



- 1 UN** 세계인권선언+ 9개 조약
UN인권이사회
UPR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 2 국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NAP 국가인권기본계획
- 3 지역** 인권기본조례
지자체인권위원회
지자체인권기본계획
2012 인권위 표준조례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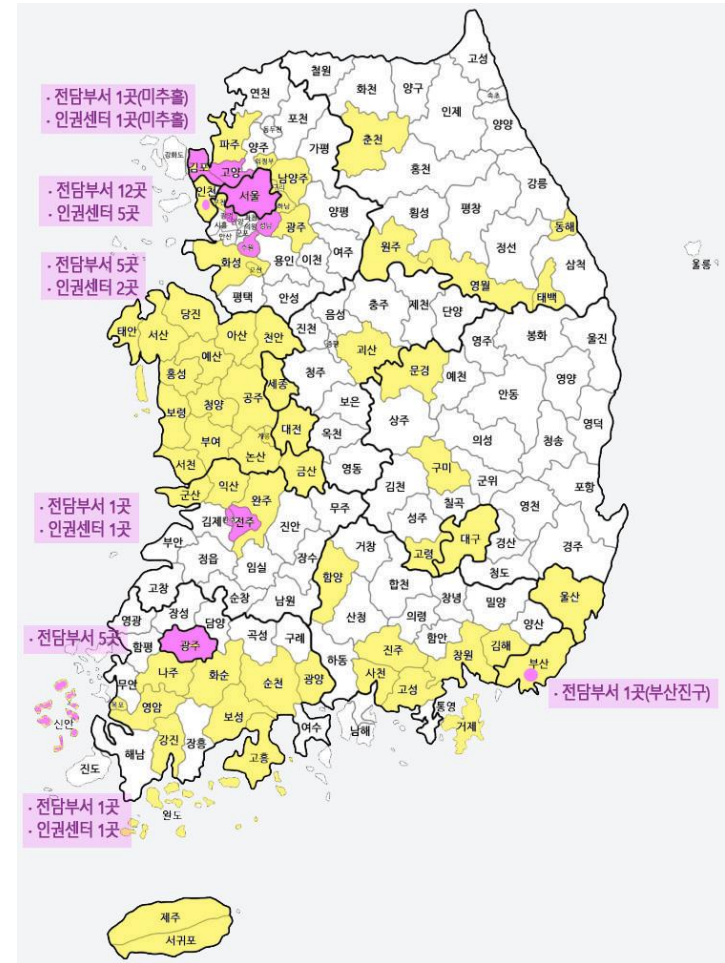
“지역인권보장체계” – 규범, 제도, 정책



- 01 인권기본조례
인권헌장
- 02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침해구제제도(인권보호관)
- 03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 인권퇴행의 시대” – 지역인권보장체계는 관찰은가?

- 2012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인권보장체계의 변화가 필요
- 국가단위의 인권보장체계 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
- 지역인권보장체계 외연의 확대**
 17개 광역시 인권조례 제정(기초 111곳 제정) _ 2024년 기준
 인권전담부서(인권옴부즈만, 인권센터 등) 설치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권교육 추진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권경영 선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강화
- 인권보장체계의 정치화, 형해화**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는 취약한 제도운영
 지역인권역량에 따른 현저한 지역적 격차
지역인권보장체계 존재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인권인프라 부재한 가운데 인권위원회 구성의 정치화
 (전문성 부족, 인권위원회의 차별 혐오발언까지 발생)



“인권지형의 변화”

지방정부의 인권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이 확산되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권교육 등 조심스럽게 인권행정을 시작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

2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교육청은 물론 경남, 울산 등 학생인권 지원센터 등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에 대응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에 대학인권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운영되기 시작

경찰, 검찰 등 인권제도 운영

3

경찰 : ‘청문인권감사관실’ 운영,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인권 보호관 신설, 경찰청인권위원회 운영과 경찰수사인권보호규칙, NAP와 연계하여 ‘경찰인권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
검찰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검찰인권위원회 운영
2017년 인권보호관 신설, 2021년 인권보호부 신설

공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도입

4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이 기관경영평가 항목에 들어가면서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선언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인권의 위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무력화
충남에서 벌어지는 두번째 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
부산시, 경남 등의 인권전담부서 개편,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민청원
교과부와 각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의 변경 등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인권과' 민주와 관련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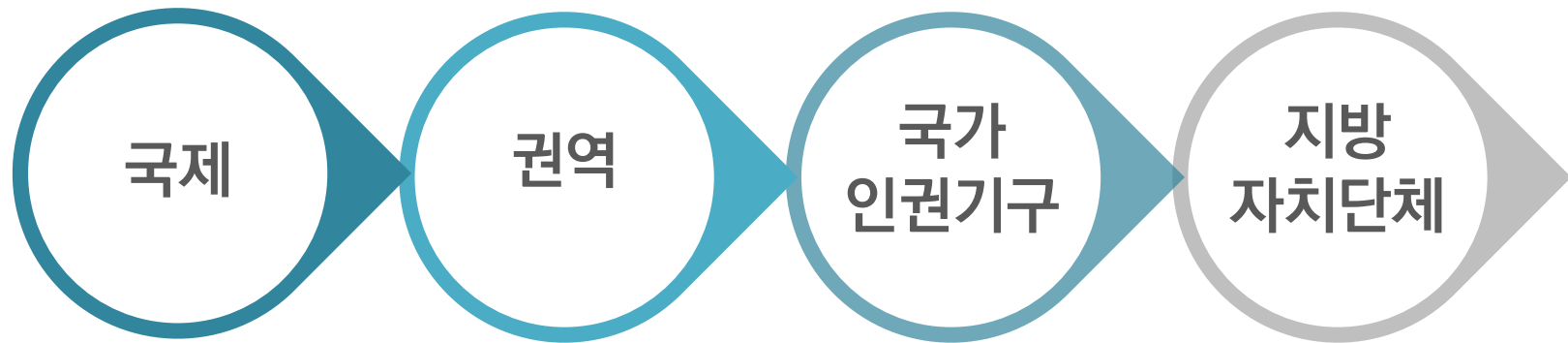
“지방자치와 인권의 위기” _ 명백한 퇴행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 정책 추진성과
2022년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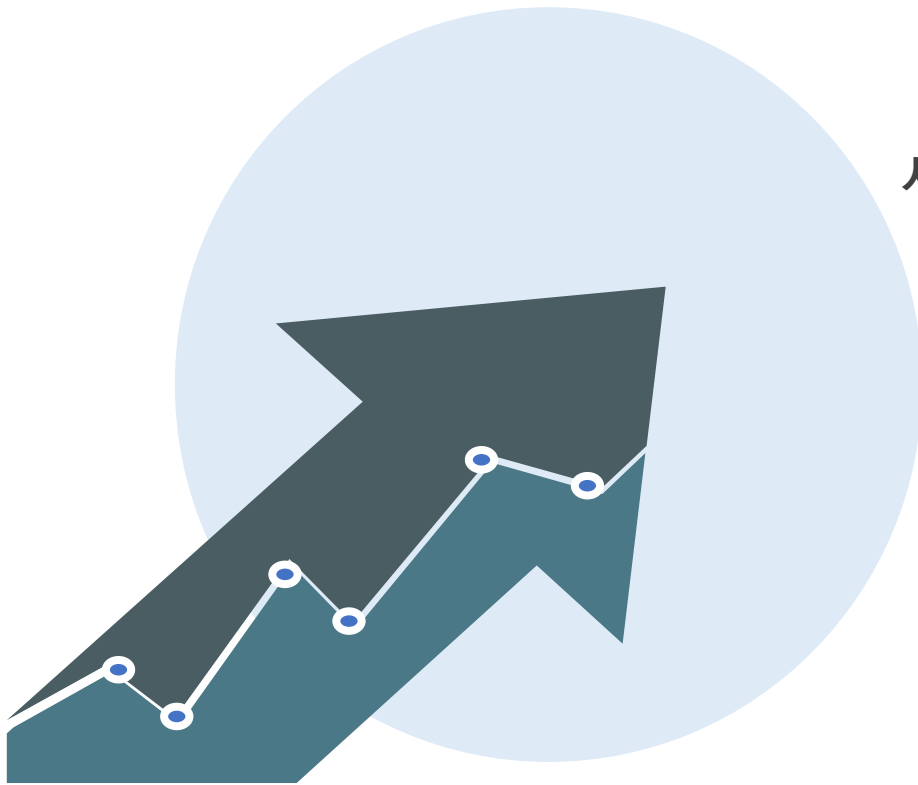
“ 인권보장체계 ”

국가중심 -> UN/UDHR이후 : 인권영역의 확산 실제화



인권보장책무 : 국제사회 + 각 국가 → 지방자치단체(인권도시) + 기업(BHR 인권경영)

“기업과 인권” _ 사회적 영향력



세계화 시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시장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지역경제



환경



고용



저발전국

“기업과 인권”

인권에 대한 새로운 위협



인권유린 주범 공범으로 역할 부상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시장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
사회공동체에도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기업이 인권보호 의무,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귀결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 제기

CSR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이 목표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즉 **지속가능경영으로** 착각

“기업과 인권” _ 대표적 국제규범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Suwen Song | Adooti Adesanya | Haider Bukhari | Yashodhara Rajaraman
| Fengqiong Lu | Yiping Gao | Cao Di 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A GLOBAL CONTEXT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기업과 인권” _ 자율에서 제도화로!

CSR 기업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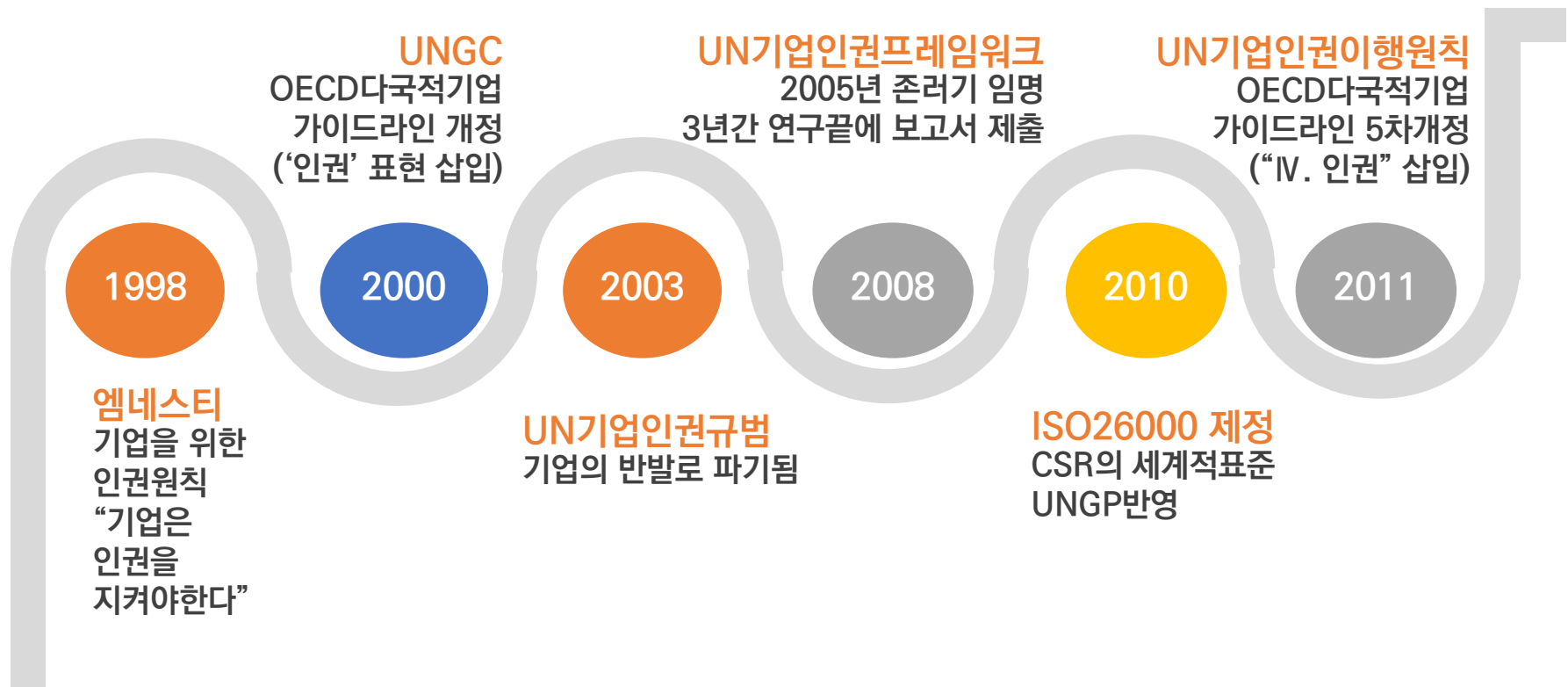
BHR

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모호함의 한계
기업과 인권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자는 것”이 목표

인권보장의 공백(Governance Gap)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BHR은 출발!

“기업과 인권” _ 규범의 정립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5년, UN은 존러기 교수를 ‘인권과 다국적 기업과 기타 기업체의 문제’에 관한 UN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

1단계
(2005-2007)

기초연구단계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고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임

2단계
(2007-2008)

권고안 작성단계

인권이사회에서 승인(Framework)
3개로 분류해서 틀을 제시

3단계
(2008-2010)

이행원칙의 작성단계

인권이사회에서 승인(이행원칙)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방안마련”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의 확산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개정 : 2011년 인권장 신설
- ISO26000 : UNGP 내용 반영
- 정부간기구(G7, G20, EU, ASEAN 등) -> 국가행동계획(NAP)
- 개별 국가의 관련법 제정 : 주로 인권실사의무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UNGPs 후속작업

- 2014 초국적 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협정 실무작업반 구성
- 2018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 초안(Zero Draft) 발표 후 이해관계자(노사정) 논의 중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법제화 현황

- **프랑스** : 인권실사법(Duty of Vigilance Law, 2017)
직원 5천명 or 자회사 1만명 이상 모든 기업은 인권실사(Due Diligence) 지침을 세워 위험 맵핑(Mapping)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및 공개 (법원의 이행강제 및 공개 可)
- **독일** : 공급망실사법(2021, 7월 제정) 2023년 발효
민간기업 에 인권 또는 환경관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 실사 의무부과, 직원 3000명규모 2023, 1000명 규모 2024년
- **미국** : 외국인불법행위법, 도드·프랭크법(분쟁지역 광물 실사, 증권거래소 제출의무),
캘리포니아주 공급망투명성법(현대판 노예제 근전을 위한 제조·유통업체 기업활동 내역 공개 의무로 주 법무부의 기소권과 연계)
- **영국** : 현대판노예방지법(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대응 조치 공시)
- **호주** : 현대판노예방지법(이주노동자를 위한 과수업과 청소업 인권 강조)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2011년)



기업,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피해자 구제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목표, 계획수립 및 구제수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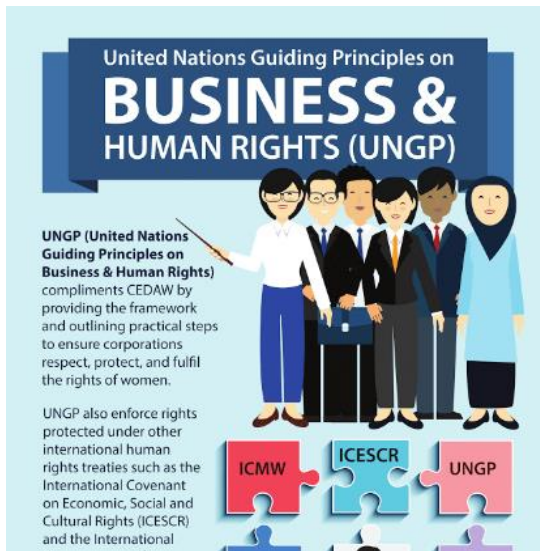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수단 운영
구제수단의 접근성 강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1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원칙 1-10)



기존 국제인권법과 규범, 조약 적용

국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식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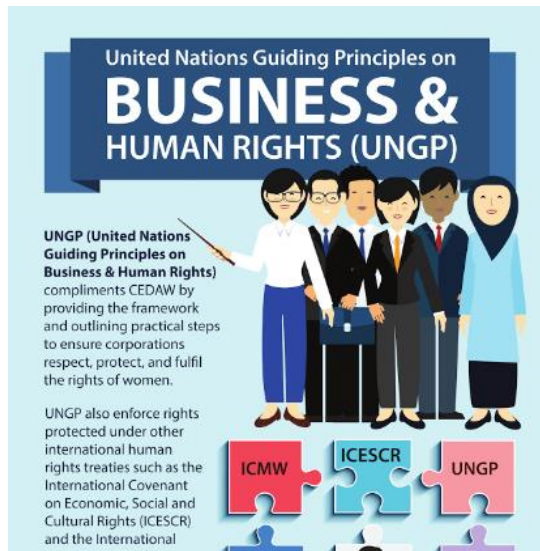
기업의 인권문제의 해결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라

국가가 기업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실천을 해라.
한편으로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라.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원칙 11-24)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자발적 책임이 아님
→ 국내법 제도 적용

모든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즉,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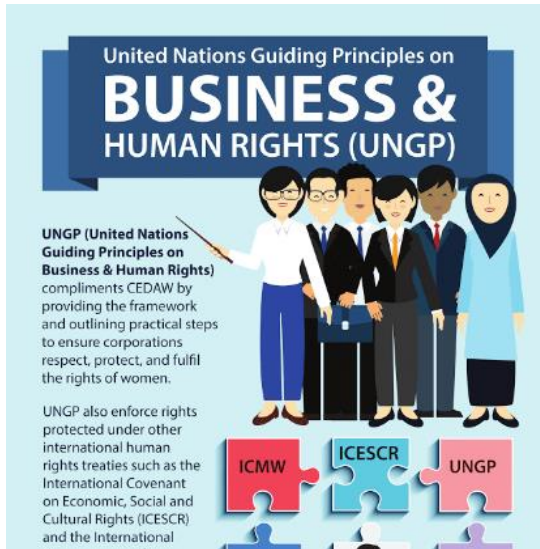
기업은 직접 인권침해를 유발(cause)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기여(contribute)되어서는 안 된다.(원칙 13(a))

만약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사업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linked)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원칙 13(b))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3

구제책에 대한 접근 (원칙 25-31)



국가와 기업의 인권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장치 → 제도화 (기업예시 : 인권경영위원회)

국가의 구제

사법상, 행정상, 입법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원칙 25)

기업의 구제

비사법적 구제장치(제도화)로 기업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제기된 문제가 빠르게 논의되고 곧바로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설립하거나 참여해야 한다.(원칙 29)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_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에 인권·환경보호 의무 부여...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2024. 4. 24)

유럽 수출 한국 대기업 다수 대상, 위반 땀 연 매출 5% 과징금 폭탄, 2027년부터 기업 규모 따라 시행



기업에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 및 인권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5월 27개국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 발효 시 EU 27개국은 2년 이내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